

클리어FC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우리 모임의 이름은 "클리어 풋살 클럽"(이하 "팀")입니다.

제2조 (목적과 사업)

- 1. 우리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, 축구를 통한 화합과 존중을 이루고 건강한 체력을 다지기 위해 모였습니다.
- 2. 우리는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.
 - a. 우리끼리 자체 경기
 - b. 다른 팀 또는 단체와 친선 경기
 - c. 정기총회 개최
 - d. 임시총회 개최
 - e. 기타 팀의 발전과 회원 화합을 위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3조 (회원의 자격)

- 1. 회원의 거주지/연령/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
- 2.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합니다.
- 3. 준회원은 준회원 자격을 얻은 날을 포함, 60일 이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- 4. 준회원은 매니저에게 정회원 가입의사 및 팀 정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 - a. 정회원 자격은 입회비를 납부한 즉시 갖게 됩니다.
 - b. 입회비 납부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 월회비도 납부해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합니다.
 - c. 입회비 납부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부터 월회비를 납부합니다.

제4조 (회원수의 제한)

- 1. 정회원의 수는 최대 35명으로 제한합니다.
- 2. 준회원의 수는 최대 15명으로 제한합니다.
- 3. 정회원과 준회원수가 최대에 이르면 신규 가입을 제한합니다. 단 매니저 재량에 따라 신규 가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1. 회원은 팀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2.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3. 회원은 팀에서 정한 기타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4. 회원은 팀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갖습니다.
- 5. 정회원은 회칙개정 참여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습니다.
- 6. 준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.

제6조 (회원자격 상실)

- 1. 정회원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자격을 상실하고 준회원 자격을 갖습니다.
 - a. 마지막으로 참석한 운동일자를 포함, 180일을 초과하여 운동에 불참한 경우
 - b. 마지막으로 회비를 납부한 달을 포함, 6개월을 초과하여 회비를 미납한 경우
 - c. 그 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2. 준회원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.
 - a. 마지막으로 참석한 운동일자를 포함, 30일을 초과하여 운동에 불참한 경우
 - b. 준회원 자격을 얻은 날을 포함, 60일 이내 정회원이 되지 않은 경우 (단, 회원수의 제한에 따라 준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)
 - c. 그 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제명된 경우
- 3. 회원은 자진해서 팀을 탈퇴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상벌 및 징계)

- 1. 팀의 발전에 공이 있고 모범이 된 회원에게는 감사패나 공로패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
- 2. 팀의 발전에 해를 끼치고, 회원 사이 불화를 조성하는 회원에게는 징계를 줄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a. 주의 운동 중 지나친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화감 조성이 잦은 경우 2주간 운동 금지

- b. 경고 운동 중 코치나 주장의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경우 4주간 운동 금지
- c. 제명 운동 중 심한 욕설 혹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
- 3. 회원은 제명을 제외한 모든 징계 중에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제3장 회비 및 예산

제8조 (회비)

1. 입회비: 20,000원

2. 월회비: 30,000원

3. 준회원/일일방문자: 10,000원

제9조 (회비의 관리)

- 1. 팀 회비는 총무(부재 시 매니저)가 지출/보고/관리합니다.
- 2. 팀 회비 지출 시 지출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첨부해야 하며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합니다.
 - a. 신용카드 영수증
 - b. 간이영수증
 - c. 이체확인증

제10조 (입회비) 신규 정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
제11조 (월회비)

- 1. 정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월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2. 팀 회비 보유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경우 총무와 매니저가 협의하여 월회비를 일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운동참가비)

- 1. 월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더라도 팀 회비가 부족한 경우 운동참가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2. 준회원 및 일일방문자는 운동참가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 단, 운동참가비는 매니저 재량에 따라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(예산 및 결산)

1. 팀 수입지출 예산은 정기총회 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단, 회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예산 승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2. 팀 수입지출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열람가능한 방법으로 공개하며, 정기총회 시 1년 결산하여 이를 보고합니다.

제14조 (회비면제)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회비를 면제합니다.

- 1. 만 20세 이하 회원
- 2. 본인이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회원
- 3. 팀에서 주관하는 운동, 행사에 참여하는 도중 부상을 입어 운동 참여가 어려운 회원이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
- 4. 팀에서 주관하는 운동, 행사에 참여하는 도중 부상을 입어 입원하는 경우 (이 경우 부상의 경중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)
- 5. 질병 또는 일상생활(단, 다른팀의 운동, 행사 참여는 제외)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회원이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

제15조 (환불)

- 1. 회원이 제명되는 경우 입회비, 월회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2. 회원이 자진해서 팀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월회비를 환불합니다.
 - a. 50% 환불 매월 15일 이전에 탈퇴하고, 월회비를 완납한 경우
 - b. 100% 환불
 - i. 매월 첫번째 운동을 하기 전이고, 월회비를 완납한 경우
 - ii. 회비면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. 월회비를 완납한 경우
- 3. 회원이 경조사비를 지급 받은 날 포함 90일 이내 자진해서 팀을 탈퇴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4. 탈퇴하는 달의 월회비에만 적용하며, 이전 납부내역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4장 조직 및 운영기구

제16조 (총회)

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에서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.

- 1.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반드시 개최하며 매니저는 최소 2주 전에 공고합니다.
- 2. 정기총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합니다.
 - a. 매니저 선출
 - b. 회칙 개정 :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되는 내용은 개정 시행일을 포함 14일 전에 전체회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.

- c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
- d. 결산 보고 및 예산편성 승인
- e. 기타 필요한 사항
- 3. 임시총회는 매니저 재량으로 혹은 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니저에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개최 요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최합니다.
- 4. 임시총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팀 단체회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- a. 임시총회 비용(1인 30,000원)을 제외하고도 3개월 동안 팀 운용에 자금적 무리가 없는 경우
 - b. 회원 각출로 진행하는 경우

제17조 (운영주체)

- 1. 팀 대표, 업무 총괄,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장은 매니저가 합니다.
- 2. 매니저가 일시적으로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, 부매니저 혹은 매니저가 지정하는 정회원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.
- 3. 감사는 팀 회비 수입지출의 정합성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합니다.
- 4. 운동장에서의 진행은 코치와 주장이 전담하며, 코치와 주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코치의 의견을 우선합니다.

제18조 (매니저 선출)

- 1. 매니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임합니다.
 - a. 임기 종료 한달 전에 매니저가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경우
 - b. 다른 회원이 매니저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2. 매니저 임기 시작일은 4월 1일이며, 종료일은 임기 시작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한 3월 31일입니다.
- 3. 매니저는 임기 종료 시 후임 매니저를 추천하거나 지목할 수 있습니다.
 - a. 추천 혹은 지목 받지 않은 다른 회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를 실시합니다.
 - b. 추천 혹은 지목 받은 회원 외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.

제19조 (임원의 구성 및 임명)

1. 매니저는 재량에 따라 임원을 구성하고, 임명할 수 있습니다.

- a. 부매니저 1인
- b. 코치 1인
- c. 주장 2인
- d. 총무 1인
- e. 감사 1인
- 2. 매니저가 임명하지 않은 임원의 역할과 권한은 매니저에게 있습니다.

제20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임합니다.

- 1. 임원이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경우
- 2. 임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경우

제5장 부칙

제2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22조 (회계년도) 본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합니다.

제23조 (회칙의 개정) 본 회칙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과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 (투표의 위임은 매니저 동의하에 가능합니다.)

제24조 (기타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